DGB대구은행

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18-307호(2018.10.16~2020.10.15)

DGB대구은행 www.dgb.co.kr

『DGB장병내일준비적금』 요약 상품설명서

■ 기본 정보

최고금리	연 5.0%	'18.11.2일 현재 24개월 기준	
가입기간	6개월 ~ 24개월 (일단위)	만기일은 전역예정일과 일치함 남은 군복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는 가입 불가	
최저가입금액	1만원	최고가입금액	월 20만원 (전 금융기관 합산 40만원 이내)
재예치	불가		
일부해지	불가		
예금담보대출	가능	예금잔액의 95%까지 가능	
예금자보호	대상	원금과 이자 포함 5천만원까지 가능	

■ 유의 사항

중도해지이자율	기본이자율 × 10% ~ 기본이자율 × 80%
이자계산방식	입금 건별로 해당기간 약정이자율 지급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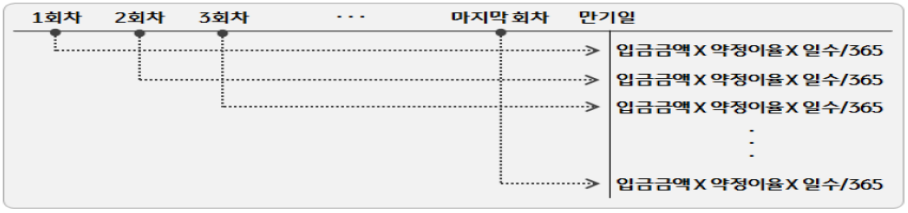
비과세	가능
국가재정지원금	연 1.0%

※ 본 요약 상품설명서는 「DGB장병내일준비적금」의 간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DGB대구은행

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18-307호(2018.10.16~2020.10.15)

www.dgb.co.kr DGB대구은행

『DGB장병내일준비적금』 상품설명서

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실제 계약은 DGB장병내일준비적금 특약, 적립식예금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.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,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통장 또는 증서 등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

1 상품 개요 및 특징

■ 상품명: DGB장병내일준비적금

■ 상품특징: 청년 장병들의 전역 후 원활한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목돈마련 상품

2 거래 조건

☞ 이자율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.
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내 용</th></tr>
<tr><td>가입대상</td><td>• 현역병사(육군·해군·공군·해병대), 상근예비역, 의무경찰, 해양의무경찰, 의무소방대원, 사회복무요원
(상기 명시된 대상자 외 가입 불가, 가입자격확인서 징구 필수)</td></tr>
<tr><td>가입기간</td><td>• 6개월 ~ 24개월(일단위)
※ 상품 가입 시점에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는 가입 불가
※ 이 예금의 만기일자는 반드시 전역일자와 일치하여야 함</td></tr>
<tr><td>가입금액</td><td>• 가입금액 : 1만원 이상 20만원 이하
(단, 판매금융기관 통합한도인 개인별 최대한도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)
• 추가입금액 : 매회 1만원 이상 월 최대 20만원 이하(가입금액 포함)</td></tr>
<tr><td>가입계좌수</td><td>• 금융기관별 1인 1계좌</td></tr>
<tr><td>적립방법</td><td>• 자유적립식</td></tr>
<tr><td>제한사항</td><td>• 공동명의 신규 불가</td></tr>
<tr><td>기본이자율
(단리, 세금납부전)
18.11.2현재</td><td>
<table>
<tr><th>예치기간</th><th>이자율</th></tr>
<tr><td>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</td><td>연 4.0%</td></tr>
<tr><td>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</td><td>연 4.5%</td></tr>
<tr><td>18개월 이상 24개월 이하</td><td>연 5.0%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tr><td>중도해지 이자율
(단리, 세금납부전)</td><td>
<table>
<tr><td>입금일로부터 20% 미만 경과된 월부금</td><td>기본이자율 × 10%</td><td>입금일로부터 60%~80% 미만 경과된 월부금</td><td>기본이자율 × 60%</td></tr>
<tr><td>입금일로부터 20%~40% 미만 경과된 월부금</td><td>기본이자율 × 20%</td><td>입금일로부터 80%~100% 미만 경과된 월부금</td><td>기본이자율 × 80%</td></tr>
<tr><td>입금일로부터 40%~60% 미만 경과된 월부금</td><td>기본이자율 × 40%</td><td colspan="2">※ 만기일대비 경과기간비율에 따른 기본 이자율 비율 적용함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/table>

2 거래 조건(계속)

구 분	내 용
중도해지 이자율 (단리, 세금납부전)	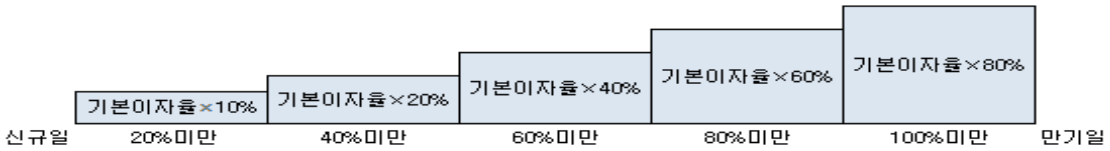 ※ 기본이자율은 신규가입일(또는 재예치일) 당시 해당계좌에 적용된 기본이자율입니다. ☞ 만기일까지 약정한 모든 회차의 월입금액을 입금하지 않고 만기일 이후 청구 시 중도해지이자율 적용
만기후 이자율 (단리, 세금납부전)	<table><tr><td>만기 후 1개월 미만 경과</td><td>약정이자율 ×50%</td><td rowspan="2">만기 후 3개월 이상 경과</td><td rowspan="2">약정이자율 × 10%</td></tr><tr><td>만기 후 3개월 미만경과</td><td>약정이자율 ×25%</td></tr></table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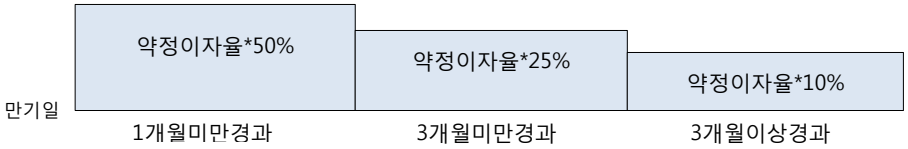 ※약정이자율은 만기시 확정된 이자율입니다.
이자계산 방법	•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 - 입금건별 이자계산 산식: 입금금액 X 약정이율 X 일수(입금일~만기일 전일)/365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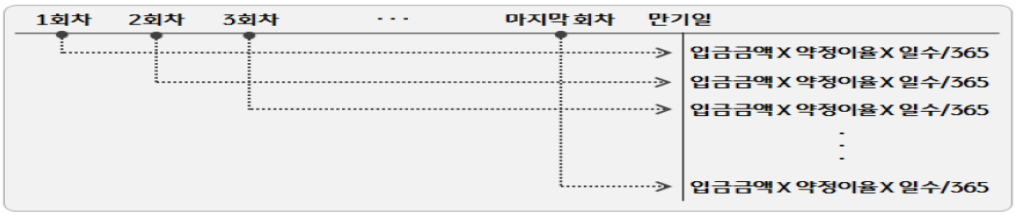
거래방법	• 신규 및 해지: 영업점 (영업점 창구를 통한 「가입·재정지원 자격확인서」 원본 제출 후 신규 및 해지 가능)
이자지급 방식	• 만기지급식 ※ 적금 만기일(전역일)이 휴무일인 경우, 휴무일 직전 영업일에 만기 해지 가능
만기자동해지	• 불가
만기재예치	• 불가
일부해지	• 불가
만기앞당김 지급	• 불가
양도 및 질권설정	• 양도 불가하고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질권설정이 가능하며, 예금담보대출은 예금 저축 금액의 95% 이내에서 가능
부가서비스 (외환우대)	• 우대내용 : 이 적금의 만기 해지 후 1년 이내, 당행 영업점을 통한 외화 환전·송금 거래에 한함 ① 외국통화 매매 시 : USD·JPY·EUR 50% 우대, CNY30% 우대 ② 외화송금수수료(해외로 보낼 때) : 50% 우대 ※다른 외환우대 기준에 따른 우대내용과 중복될 경우, 그 중 유리한 1가지 우대기준에 따른 우대내용 적용
지급제한	• 계좌에 압류,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

2 거래 조건(계속)

구 분	내 용	
세제혜택	• 이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「소득세법」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되나, 향후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및 「농어촌특별세법」의 개정에 따라 비과세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.	
만기후 처리방법	•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시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, 출연된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조회 및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.	
무통장	• 무통장 신규 가능	
예금자 보호여부	해당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	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최고 5천만원"이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

3 재정지원금

☞ 재정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불가 기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방부 복지정책과(☎02-748-6613)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구 분	내 용
재정지원금 이란?	• '장병내일준비적금' 가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. ※재정지원금은 적금을 해지하는 경우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.
지급대상	• 이 적금 예금주로서 아래 ①,②,③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만기계좌 ② 적금 만기일과 전역일(또는 소집해제일)이 일치하는 고객 ※법에 의해 복무기간이 단축되어 전역일(또는 소집해제일)이 당겨진 고객 포함 ③ 계좌 해지할 때 전역일(또는 소집해제일)이 명기된 '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·재정지원 자격 확인서' 주) 원본 제출 ※주) '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·재정지원 자격 확인서' 발급 - 복무중인(전역전), 또는 복무하였던(전역후) 소속부대 또는 소속기관 등에 본인이 직접 신청

복무구분	현역,상근예비역	의무경찰	해양의무경찰	의무소방원	사회복무요원
발급처	국방부	경찰청	해양경찰청	소방청	병무청(사회복무포털)

지급금액	• 적금 신규일부터 만기일까지 입금금액 건별로 실제 예치일수 기간 동안 연1.0%p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 ※실제 예치일수 : 입금일부터 적금 만기일 전일까지임 ※입금금액 건 별로 원미만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(소수점 셋째 자리에서부터 버림) 후 합산하여 원미만 절사
알아두실 사항	• 중도해지 계좌는 재정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 • 적금만기일과 전역일(또는 소집해제일)이 일치하지 않는 고객은 재정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 ※단, 법에 의해 복무기간이 단축되어 전역일(또는 소집해제일)이 앞당겨진 고객은 제외

3 재정지원금(계속)

구 분	내 용
알아두실 사항	• 전역일(또는 소집해제일)이 명기된 '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·재정지원 자격 확인서'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만기해지 하는 경우 재정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따라서, 재정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고객님께서는 만기해지 할 때 반드시 전역일(또는 소집해제일)이 명기된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·재정지원 자격 확인서' 원본을 영업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서류 미제출로 인한 재청구 불가) • 재정지원금은 국가(국방부, 병무청)에서 지급하는 자금으로, 국가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
4 유의 사항

■ 만기전 해지 할 경우 약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하며, 비과세 및 재정지원금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.

■ 이 적금은 'DGB대구은행'과 '국방부(병무청)' 간 업무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상품으로, 향후 업무협약 및 관련 법 변경에 따라 상품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■ 이 적금을 한번이라도 만기해지한 고객은 재 가입이 불가합니다.

이 예금은 DGB대구은행 수신기획부에서 개발한 금융상품입니다.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(민원)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(1566-5050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dgb.co.kr)에 문의할 수 있고,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